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7월 3일 유 재 길 의원외 17인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7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9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o 본 회 의(제1차) : 유 재 길 의원

o 총무사회위원회 : 유 재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o 지역 인재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지급할 장학금과 수급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o 장학생의 자격(안 제13조)

- 「고등학교(시내) 또는 대학교」를 「고등학교(시내),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」로 확대

o 장학기금을 2002년도부터 10년동안 5,000～6,000만원씩 적립하여 150,000만원이 되도록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"생 략"

4. 위원회 활동

o 제10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19)

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
o 제10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24)
-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

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,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

o 수혜대상 장학생은 목포시가 본적이거나 3년이상 주민등록을 목포시에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(시내) 또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로 하고

o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하여 목포시에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개정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목포시장의 의견이 있었으므로

o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에서 매년 5,000만원~6,000만원씩 장학기금을 조성하여,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늘리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「**원안가결**」 하였음.

6. 심사결과

【원 안 가 결】